
입 법 정 보

2018-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2.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7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9
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0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
10.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
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12
1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3
13.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4
1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4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5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8
1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8
20.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9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9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
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1
2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2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2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3
2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3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4
3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4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5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6
33.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26
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7
3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36.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27
3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8
3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2
39.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4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4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4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3
4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6.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48.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7
49.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7
50.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8
51.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정(안) (행정안전부).....	38
52.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39
53.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0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1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2
5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2
5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3
5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3
5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4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4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5
6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6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6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6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7
6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7

6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8
6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8
69.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9
7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0
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0
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1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2
7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53
75.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53
7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54
7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4
7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5
79. 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6
80. 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6
8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7
8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8
8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9
8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9
8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9
8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0

정부입법 예고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 15.
- 마감일자 : 2018. 02. 26.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철폐(안 제25조의2 및 별표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감면규정 철폐 권고 수용 및 해양오염방지,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안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산금부과기준 정비 권고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을 정액(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3%)에서 정률 기준(하루에 0.1%, 최대 3%)으로 변경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선박직원으로 규정하고,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해양환경기사 등의 자격 또는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업무 경력으로 규정

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1조, 별표8, 별표9)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모두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마. 방제분담금 가산금 및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안 제54조의2 및 안 제54조의3)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2)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 15.
- 마감일자 : 2018. 2. 26.
-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28225호, 2017. 8. 1. 공포, 2017. 8. 1. 시행)에 맞추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제한하는 변호사법 제94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지 못하도록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하고 변호사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정 개정(안 제94조 제2항)
 - 1)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17. 8.)에 맞추어 변호사법 제94조 제2항 본문 중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 개정함
 - 2) 법무부 법무실장이 변호사 징계에 관하여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무실장의 주요 분장업무인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94조 제6항 신설)
 - 1)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해촉하지 못하도록 해임·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함
 -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공무원 아닌 위원 또는 예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94조 제7항 신설)

- 1)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 15. • 마감일자 : 2018. 2. 26.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확대(1억원→10억원)를 계기로 제도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된 과태료 부과행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안 제15조의2제1항)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및 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초과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최고 부과액을 설정하고 가중·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0.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 15. • 마감일자 : 2018. 2. 26.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

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 주요내용

- 가. 국외현지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3조의3)
- 나.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20조의2)
- 다. 은행 주식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 (안 별표1)
- 라. 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안 별표3)

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 15.
- 마감일자 : 2018. 2. 26.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15.10월)」 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 주요내용

- 가.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받은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28조)
- 나.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제를 은행법령에서 삭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안 제28조의2)
- 다. 은행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업무 취급의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34조의4)

라. 조정 불성립시 심리기일의 지정(안 제31조의2제5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함.

마. 기 타

조정개시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3조제9호), 간사장과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정절차 운영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9호).

13.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 16.

• 마감일자 : 2018. 2. 26.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시행)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인 “생산·유통 자율조절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자율조절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

나.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시 승인 요건 등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 납부자(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50% 초과)·생산량 등 (전국 대비 50% 이상)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고 설치계획 승인 후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함

14.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 16.

• 마감일자 : 2018. 2. 26.

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축사업 위탁 시 고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제2항제3호)

* 해당 품목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수매 또는 보관단계에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품목 여건에 맞게 규정

나.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해촉 근거 마련 및 비밀 유지의무 신설(안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연임기준 추가, 비밀유지 의무 및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명시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16. • 마감일자 : 2018. 2. 28.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4조) 조사 및 검증방법, 통계 자료 사용 및 데이터 활용,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원활한 수행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16. • 마감일자 : 2018. 2. 28.

○ 지역·지구등의 신설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강화, 사업지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 지역·지구등의 적시 정비를 위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

개선 사항의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조치, 지역·지구 운영 등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 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사업지구의 근거법률 및 명칭 명시, 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제도개선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조치계획서 제출 기한 명시, 조치계획서에 지역·지구등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지구의 근거 법률 및 명칭을 별표 2에 규정(안 제5조의4)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등 44개의 사업 지역·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등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주기 설정(안 제7조의2)
지정권자가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주기(10년)를 설정하여 수요와 여건 변화에 맞는 지역·지구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4조)

중점 평가부분 선정, 개선 관련 사항, 평가서 작성기준 관련 사항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제도개선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5조)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이행계획서·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단의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 17.10.24, ' 17.12.19 공포, ' 18.4.25, '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시 신고절차 조항 신설(시행규칙안 제15조의2 신설 및 준용규정 개정)
 - 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류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의 근거를 규정(시행규칙안 제82조, 제83조 및 제85조)
 -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분야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규칙안 제121조제3항, 제138조제6항에 따른 별표 5의2)
 - 4) 원전 사업자가 해체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 등에서 오기 등을 확인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3조제1항)

1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 17.10.24, ' 17.12.19 공포, ' 18.4.25, '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중 개정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41조제1항)
 - 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정법률로 이관된 사항 삭제(시행령안 제93조제1항 개정, 제

94조 및 제95조 삭제)

- 3)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 4) 원자력관련 면허 보수교육 이수요건 개선(시행령안 제149조제6항)
- 5) 지위승계 신고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에 개정법률 조문 추가(시행령안 155조의2)

20.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7.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이 인용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1호를 「민법」내용에 부합하게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 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 나.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 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 다. 가축방역관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함
- 라. 역학조사반 구성 및 퇴직경찰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조사 의무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역학조사 시 퇴직경찰관 동행 근거 마련
- 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 바.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 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 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안 제22조의5)
 -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7.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 마련
- 자. 가축의 폐사율 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
 -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 나.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1조, 별표 2)
 -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현실화 및 감경기준 추가(안 제11조, 별표 2)
 -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 라.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문 삭제(안 제14조의3 삭제)

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1. 2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7호, 시행 2017.9.5.) 개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

○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간사를 현행 ‘대외경제국장’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

*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명칭 등 변경시마다 시행령 개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위원회 간사를 당해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개정

2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7.12.13)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함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시, 신청서에 기재하는 계좌번호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17.

• 마감일자 : 2018. 2. 26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 18.

• 마감일자 : 2018. 2. 27.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가능한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 가능 범위를 규정하되 위탁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안 제13조의3 제1항)
-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의 반영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지침에 포함(안 제13조의3 제2항)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18. ● 마감일자 : 2018. 2. 27.
-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18. ● 마감일자 : 2018. 2. 27.
-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다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18.

• 마감일자 : 2018. 2. 27.

-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18. ● 마감일자 : 2018. 2. 27.
-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3.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2. 28.
- 도시개발사업구역이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 제고 차원에서 사업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2. 22.
-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일부 과징금액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과징금액 개정안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함.
- 영 [별표 2] 수정
 - 별표 2 제2호 나목 중 매출액 10,000백만원 이상의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수정

3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2. 28.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공포, 2017. 12. 12. 시행)으로 공중위생 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 마련(안 제 19조)

36.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1. 24.
- 의원입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 소속의 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제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증가하는 법령해석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정책국 밑에 두는 법제조정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3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01. 19. ● 마감일자 : 2018. 2. 28.
- 2001년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 은 외국의 입법례 및 당시 성안과정에 있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음. 이에 국제사법 개정 이후 축적된 판례 및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증가에 대응하여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총칙(제1장)
 - 1) 일반원칙(안 제2조) : 개정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실질적 관련성’ 을 구체화하는 기준(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들을 반영하여 개정
 - 2) 일반관할(안 제3조) : 신설
자연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소에 관하여 상거소(常居所)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관할 규정 신설
 - 3)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안 제4조) : 신설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4)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안 제5조) : 신설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5) 관련사건의 관할(안 제6조) : 신설
판결의 모순·저축을 피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6) 반소관할(안 제7조) : 신설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축을 피하기 위해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7) 합의관할(안 제8조) : 신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8) 변론관할(안 제9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 등을 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9) 전속관할(안 제10조) : 신설
분쟁의 성질상 법원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공적 장부 등기등)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 신설
- 10) 국제적 소송경합(안 제11조) : 신설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판결의 모순·저축을 피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11)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안 제12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할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규정 신설
- 12) 보전처분(안 제14조) : 신설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보전처분에 대해서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13) 비송사건(안 제15조) : 신설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신설

나. 사람(제2장)

- 1)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24조) : 개정
법원이 실종선고 등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신설
- 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25조) : 신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에 일반관할이 있는 경우 사원 등에 대한 소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다. 지식재산권(제5장)

- 1)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39조) : 신설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 사용, 행사되는 경우 등에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2)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0조) :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라. 채권(제6장)

- 1)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2조) : 신설
계약 유형별로 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5조) : 신설
불법행위지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마. 친족(제7장)

- 1)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7조) : 신설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를 구체화한 규정 신설
- 2)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8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3)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9조) : 신설
양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4)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0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등의 사건에 관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5) 부양사건의 관할(안 제61조) : 신설
부양권리자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의 국제재판관할 및 부양사건에 대한 관할합의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6) 후견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2조) : 신설
성년 및 미성년 후견에 대해 피후견인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7) 가사조정사건(안 제63조) : 신설
본안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바. 상속(제8장) 및 어음·수표(제9장)

- 1) 상속 및 유언 사건의 관할(안 제77조) : 신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상속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2)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80조) : 신설
어음·수표에 관한 소에 대하여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사. 해상(제10장)

-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안 제90조) : 신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에 관해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등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2)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1조) : 신설
선박의 압류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2조) : 신설
공동해손이 있는 경우 선박의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 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3조) : 신설
선박의 충돌이나 그밖의 사고에 관한 소에 대해 가해 선박의 선적

지 또는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4조) : 신설

해난구조 사건에 관하여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1. 23.
- 군 환경관련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군 환경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팀”의 명칭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7일에서 2021년 2월 7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39.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2. 28.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률조항(제17조의2)에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의2)

4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2. 28.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률조항(제14조의2)에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의2)

4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 19.
- 마감일자 : 2018. 2. 28.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률조항(제21조의3)에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의2)

4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 22.
- 마감일자 : 2018. 3. 5.
-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로 면제(안 제6조제3호,제4호)

4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 22.
- 마감일자 : 2018. 3. 5.
-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납처분의 입법미비사항 보완, 신용카드등 납부방법 및 결손처분제도의 근거를 훈령에서 상위법으로 법체계 정비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1월, 3월)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납부 혼선 방지(안 제9조제6항)
 - 나. 개선부담금 체납처분을 위하여 연대 납부의무와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 추가보완(안 제9조 제7항)
 - 다. 개선부담금 납부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설 (안 제9조의2)
 - 라. 개선부담금 납부대상 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

할 때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설(안 제9조의3)
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의 결손처분제도를
법률에 근거 반영(안 제21조)

4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22. ● 마감일자 : 2018. 3. 5.
-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4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22. ● 마감일자 : 2018. 3. 5.
-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신고 시 신고기한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교체빈도 적용없이 계약 완료 통보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확대(안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항, 제24조의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 규정
(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양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규정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철수 통보 시 계약 완료 사유 확대(안 제27
조제2항)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철수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서류 규정 및 관련 서류 보관의무
예외 규정 삭제(안 제56조 제5항 및 제6항)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
계에 입력하는 것이 법률로서 의무화됨에 따라 입력해야 할 서류
를 규정

마. 기타(안 제56조2항 및 제7항)

개정된 법률에 맞게 품질검사 의뢰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용 조문을 맞춤

46.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 22.
- 마감일자 : 2018. 3. 5.

○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
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
려할 수 있도록 하고, 5G 및 이후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 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1)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18조)

- 2) 통신비 인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 별표 8)

나.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보완

- 1)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에도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및 기준 마련 (별표 3)
- 2)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 제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금에 대한 규정 삭제 (별표 3)

47.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 23.
- 마감일자 : 2018. 2. 2.
- 자연공원 내 일정 지역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원구역 내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을 정함(안 제25조)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음주행위 금지장소·시설로 정함
 - 나. 공원구역 내 제한·금지행위 일부 삭제(안 제26조)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제한·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흡연행위가 법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 삭제
 - 다.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및 일부 수정(별표 3)
 - 1)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별도 위반행위로 분리함
 - 2)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위반행위로 추가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으로 정함

○ 주요내용

가. 물품의 교환 규정 완화(제15조)

- 현재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물품과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불용품 매각방법의 명확화(제33조)

- 불용품 매각 원칙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하고 세부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불용품의 양여 규정 명확화(제35조)

- 불용품을 양여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양여 대상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52.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자치단체 소유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이 동일 법령내 공유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맞이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법률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분법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강화(제13조)

- 지자체에서 실제 심의·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함

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해당 지방재산의 취득·교환 시 신고 의무규정 마련(제19조)

-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연체료·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

다. 지방재산기금 설치(제22조)

-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지방재산정책협의회 신설(제23조)

- 지방재산의 주요 정책방향, 법령·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

- 조정을 위해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신설함
- 마. 소액 사용·대부료의 일시 통합 부과·징수 근거 마련(제27조,제37조)
 - 소액의 사용·대부료에 대하여 일시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제39조)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해소를 위해 상호 점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사. 위탁개발 완료 후 사업결과에 대한 공개제도 근거 마련(제50조)
 - 일반재산 위탁개발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근거를 마련함
 - 아. 지방재산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제77조)
 -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설치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자. 일반재산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의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 근거 마련(제2조,제80조,제81조)
 -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연체료·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

53.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9조)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국가 간에 체결한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안 제182조의2)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등록절차 등은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안 제253조제6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변경등록 하였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되,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의 효력은 유지하도록 함

다.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안 제279조제2항)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협약 등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8조의6)

5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

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55조의3)

5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53조의2)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에 의한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

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63조의3)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19조의3)

6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 간 중복을 해소하고, 이들 기구와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과 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전부개정(2018. 1. 16.)됨에 따라 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 규정

6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 24.
- 마감일자 : 2018. 3. 5.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우정재산의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1백만원 초과로 변경(제21조의2 제4항)

6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 25.
- 마감일자 : 2018. 2. 1.
- ‘17년 5년 주기 표본개편 실시, 세종시 통계생산, 농어업통계 대표도향상 등의 사유로 지역별 통계조사 대상처수가 크게 변동됨에 따라 지방통계청간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하여 동북지방통계청의 8급 2명, 9급 1명과 호남지방통계청의 9급 7명을 감축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2명, 충청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국제교육원 등 총 34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87명(4급 3명, 4·5급 1명, 5급 11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20명, 연구관 11명, 연구사 51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나군 22명·다군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교원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6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 25.
- 마감일자 : 2018. 3. 6.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도* 실시(‘18.5.1)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되 영업정지일과 비례하여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69.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25.

• 마감일자 : 2018. 3. 6.

○ 고속국도 방향안내에 사용되는 안내지명의 선정대상을 추가하고, 휴게소 표지에 주유소 및 LPG충전소에 대하여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며,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및 도로표지대장에 지점안내표지와 도로명안내표지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방향안내에 사용되는 지명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을 추가(안 [별표 1])

나. 휴게소를 안내하는 휴게소표지에 표기되는 상징그림 중 주유소 상징그림 내에 전기차 등 충전시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다.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을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라 지점안내표지와 도로명안내표지로 구분(안 [별지 제1호 서식])

라. 도로표지대장에 도로명주소 및 도로표지의 좌표를 표기할 수 있

도록 양식 수정(규칙 [별표 제2호 서식])

7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 25. ● 마감일자 : 2018. 3. 7.
- 학원·교습소 폐원(소) 시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의무를 없애 편의성 도모 및 온라인 폐원(소)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정 비치장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비하며, 실제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교습비수령 후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도 ‘교습비등영수증’으로 인정하여 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 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폐원(소)을 할 경우에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의무 없음(안 제8조제4항, 제14조제4항 삭제)
 - 나.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 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변경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비치 필요성이 낮은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안 별표2 개정)

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 25. ● 마감일자 : 2018. 3. 7.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 교과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조리, 제과·제빵, 애견훈련 교습과정 추가를 통해 학원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학원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교습소에서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해 두는 ‘보조요원’을 ‘사무보조요원’으로,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운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학원·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습소에 두는 ‘보조요원’을 ‘사무보조요원’으로,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학원설립·운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용어 명확화(안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개정)
- 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 교과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조리, 제과·제빵 및 애견훈련 교습과정 추가(안 별표2 개정)
- 다. 일 단위 이용 가능한 독서실 이용료 반환 규정 개선(안 별표4 개정)

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 25.
- 마감일자 : 2018. 3. 6.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기업집단 운영 연수·교육 시설,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교육기관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 25.
- 마감일자 : 2018. 3. 6.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8조의2, 제8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허용

7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7.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시·군·구 단위로 선포함에 따라, 모든 재난 피해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선포지역 피해주민으로 한정되어 선포대상에 미포함 된 집중피해 읍·면·동은 국고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포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야기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피해 발생 읍·면·동에 국고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1항)

- 읍·면·동 지역 국구추가 지원 기준 금액은 시군구 지원기준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면동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안 제7조 별표 2)

75.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2. 14.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41호 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43호의4 서식 등)

7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2. 8.
- 전자담배 종류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자담배를 규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고체형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함(안 제60조, 제61조)
 - 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로 함(안 제62조 제2항)
 - 다. 특·광역시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납부 대상에 군지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8조 제4항)
 - 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0조)
 - 마. 납세조합이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100조의9)

7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7.
- 「중견기업법」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범위에

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목적과 범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제외 및 개정된 업종분류표 적용

- 1)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제2호)
- 2) 기존 일반지주회사의 중견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중견기업법령의 ‘별표1’을 정비(제2조제4항제2호 관련)

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법령 연계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 1)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삭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연계 조문 정비

7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7.

○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되고 매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간 입점상인의 동의방법이 법령에 불명확하여 동의 진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었음

이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점상인의 서면동의를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고 규정 내용이 포함된 통일된 서면 동의서식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에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신설된 서면 동의서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지자체에 대규모점포

등관리자 신고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정의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정의된 기존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 추가(안 제6조제1항)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신설 서면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2 서식)를 추가 제출해야 함

79. 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7.

○ 효행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제15190호, 2017.12.12.)됨에 따라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상기 효행장려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4호, 2017.11.28.)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 삭제(제4조)

효행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함

80. 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7.

○ 효행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제15190호, 2017.12.12.)됨에 따라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태료 부

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상기 효행장려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 28454호, 2017.11.28.)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
 -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8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 (안 제3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나.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조)
 -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함
- 다.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서식 마련 (안 제19조, 별지 제 23호의2서식)
 -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확인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감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서식 마련

- 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1의3)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 마련
- 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2)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에게 사실 통보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8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삭제 (안 제7조, 제9조, 별표 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나.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안 제19조, 제22조의2)
 -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안 제20조)
 -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 라.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안 제22조)
 -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문화재감

○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입석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 제외)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 추가(안 제91조제7항 신설)

1) 자동차 및 주요 차체 구조물의 전복 시험시 연료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면 또는 차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하여 연료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8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26.

● 마감일자 : 2018. 3. 7.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부동산펀드에 한해 면제되던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까지 확대하여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부동산펀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집주인이 기존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호)

나. 부동산펀드의 일반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 부동산펀드에 한해 건축허가나 부동산등기 시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별표 제3호제차목)